



남해 물고기

정보공개서

남해물고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24092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07.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01.21.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4층 404호(호계동)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031-381-777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남해물고기	남해물고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4층 404호(호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 9. 27.	문봉식	031-381-7770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92-18-016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	-	-	-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남해물고기	해산물 요리 전문점



구분	내용	추가 설명
상호	남해물고기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		당사는 영업표지에 관하여 아직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바로 전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41,393	-	-
2023년	-	-	-	568,056	-	-
2024년				668,536		

※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 매출액에 대한 증빙은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항 기재 매출액과 같습니다. 단, 위 매출액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영점의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문봉식	2022.09. ~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 없음.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의 상표는 아직 지식재산권이 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아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 자)	존속기간 만 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남해물고기] 가맹사업 현황

1. [남해물고기]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 9. 27.)

2. [남해물고기]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남해물고기	남해물고기	문봉식	가맹사업 시작 예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4층 404호(호계동)

3. [남해물고기]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남해물고기	한식	숙성회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남해물고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남해물고기]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남해물고기]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	-	-	-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남해물고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남해물고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	-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	-	-	-	-	-
판촉비	-	-	-	-	-	-

※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영업점	서울 중구 을지로 79	1588-2588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 접속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순번	항목	비고
1	회원가입	증명서/기업지원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 가맹금예치 → 서비스 가입
2	가맹본부 정보확인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 예치하기 클릭 → 가맹본부 상세정보 확인
3	가맹금 예치	상세항목 기입 후 가맹금 예치
4	가맹금 예치증서 출력	예치자료화면서 예치증서보기 클릭 → 가맹금 예치증서 인쇄하기

귀하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아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남해물고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구분	금액 (VAT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1,100만원	계약 체결 시	-가입비(가맹비의 20%) -영업표지 사용 부여의 대가(가맹비의 2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60%)
교육비	550만원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이행보증금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이행보증금	1,000만원 (VAT없음)	계약 체결 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2,650만원	2,210만원
가맹비	1,100만원	660만원
교육비	550만원	550만원
이행보증금	1,000만원(VAT없음)	1,000만원(VAT없음)

4) 기타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0㎡기준 (약 10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40,000	해당 없음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참고	20,000	20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	-
간판		2,000	해당 없음		-
가구		5,000	50		-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0㎡기준 (약 10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주방/홀설비 및 집기		10,000	100	는 반환될 수 없 음	-
초도물품		3,000	해당 없음		-
POS		임대조건	해당 없음		-
별도금액	자체 조달 및 가맹본부 등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 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인터 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덕트공사 등			매장상황 및 점 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매장상황 및 점주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며, 귀하는 인테리어/간판 공사에 대하여 [3.3㎡당 33만원(VAT포함)]의 기획관리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울·경기지역 외 지역은 별도의 실비(직원 숙박비·식비·교통비 등)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가맹점 입지의 최종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계속가맹금	가맹본부	월 총매출액의 3.3%	익월 15일 (후급)	후불 지급으로 반환될 수 없음
POS관리비	가맹본부	월 19,800원	매월 5일 (선급) 당사에 지급	운영기간에 따른 반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품질, 위생 및 서비스 기준 등에 대한 가맹점의 운영상황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품질 및 위생 점검	주방 및 홀의 위생상태 점검 제공되는 메뉴의 품질 점검	연 1회 정기 (수시점검)	-
서비스 점검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의 서비스 태도, 방식 등의 점검	연 1회 정기 (수시 점검)	-
재고 및 회계 점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 확인 매출 누락 등 확인	분기 1회 정기 (수시점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단, 당사는 다음의 경우 귀하에 재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교육비 [550만원(VAT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교육인원,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응
계약 기간 중 품질 및 위생, 서비스, 재고 및 회계 점검 2회 이상 시정사항 적발	계약 갱신, 재계약시 재교육 입 과	입과거부시 갱신 거절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 가맹비(660만원, VAT포함), 교육비(550만원, 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1,000만원, VAT없음)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수인에게에는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이 적용되나, 계약기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만원, VAT포함), 교육비(550만원, 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1,000만원, VAT없음)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남해물고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구입을 권장하는 품목(권장품목)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구입강제품목)은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한 경우 해당 품목의 종류(규격 및 단위, 거래상대방, 기준 시점 등을 포함한다),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기준시점을 포함한다)을 **[POS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된 내용은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한편, 당사는 위와 같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의 경우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고,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가를 변경,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변경은 품목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합니다.

당사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변경한 즉시 변경된 내역을 **[POS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귀하가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계					

※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 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2. 메뉴 및 권장가격]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시정요구 - 2회 이상 위반: 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또는 원/부재료의 판매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별첨1.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의 물품 및 [별첨2. 메뉴 및 권장가격]에 기재된 상품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일정한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2. 메뉴 및 권장가격]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숙성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남해물고기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되며, 특수상권은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별지1]에 지도로 표시 단, 경계선은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계약 갱신 시 재조정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사이 통보) → 계약갱신 후 변경된 영업지역 적용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해당사항 없음.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남해물고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 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남해물고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귀하가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변경 전의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업방침을 거부하는 등 귀하에게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양수인이 가맹점사업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 대리인, 수탁인은 교육비를 지급하고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 기간 동안 귀하의 비용 및 부담으로 귀하 및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제한 기간	승인 방법
해산물 요리 전문점	계약 기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남해물고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조정 방법
10:30-23:00	연중 무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조정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완료

귀하가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종업원을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이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점주 자율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품질 및 위생 점검	주방 및 홀의 위생상태 점검 제공되는 메뉴의 품질 점검	연 1회 정기 (수시점검)	-
서비스 점검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의 서비스 태도, 방식 등의 점검	연 1회 정기 (수시 점검)	-
재고 및 회계 점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 확인 매출 누락 등 확인	분기 1회 정기 (수시점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남해물고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 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광고 동의 여부 결정 → 광고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 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다만,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음.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사전 고지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 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가맹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개시 전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배상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가맹비의 20%
가맹계약 체결 10일 후 영업개시 전	가맹비의 50%

3) 귀하가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게 다음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본항에 따른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	금이천만원(₩20,000,000)
경업금지 의무 위반	금삼천만원(₩30,000,000)

4)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6개월 또는 잔여계약월 중 더 큰 숫자에 지난 6개월간 귀하의 가맹점에서 지급한 월평균 계속가맹금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당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위, 귀책사유의 정도, 잔여계약기간, 후속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여부 및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0~5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3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42(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1(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8(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2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작성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 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동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남해물고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점포 운영에 필요한 메뉴 가공, 가맹점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실습 교육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정기 교육	운영방침, 서비스기법 등 전수	실습 교육 (온라인 또는 직영점, 가맹점)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교육, 종업원 교육 등	실습 교육 (온라인 또는 직영점, 가맹점)	본사 요청 시, 일정 협의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교육, 종업원 교육 등	실습 교육 (온라인 또는 직영점, 가맹점)	점주 요청 시, 일정 협의	임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남해물고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5,500	1인 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	1일	원부재료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수시 교육	1일	원부재료 실비	당사 요청 시 필수적으로 이수
보수 교육	협의	협의	점주 요청 시 협의 시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점 전에 신규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귀하의 종업원도 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서비스 기법, 제조방법 등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의 개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신규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기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한 신메뉴 등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이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2, 4층 404호(호계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68,53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메뉴 및 권장가격

구분	메뉴	규격	권장가격
한상세트	모듬 숙성회 한상	2인	79,000원
		3인	118,000원
		4인	157,000원
		5인	196,000원
한상세트 추가메뉴	우니	-	30,000원
	모듬 사시미	-	30,000원
	계절 사시미	-	시가
	감태	-	5,000원
	고노와다	-	7,000원
	이꾸라	-	7,000원
단품메뉴	모듬 숙성회	중	55,000원
		대	88,000원
	생연어회	-	25,000원
	오늘의 탕	-	시가
	오늘의 구이	-	시가
	눈꽃 왕새우 튀김	-	15,000원
	오늘의 튀김(모듬)	-	20,000원
	간장 새우	-	20,000원
점심메뉴	계란초밥	8개	9,000원
	물회 (계절메뉴)	-	15,000원
	생대구탕 (계절메뉴)	-	15,000원
	고등어 구이	-	12,000원



	숙성회 비빔밥	-	13,000원
	간장 새우 비빔밥	-	12,000원
	간장 연어 비빔밥	-	12,000원
	후토마끼	-	15,000원
	숙성회 스시	12개	15,000원
	지라이 스시	-	25,000원

상기 메뉴 및 권장가격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 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별첨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2~2024)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